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2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7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25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1호  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  
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

(貨物連絡運送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2조(條) 중(中) 「함경중부선(咸鏡中部線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4조(條) 제1호(號)부터 제6호(號)까지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 아래[左]의 장[長], 중량(重量) 또는 용적(容積)을 초과(超過)한 화물(貨物)

가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협궤선(狹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8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30척(尺), 중량(重量) 5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4백(百) 입방척(立方尺)

나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협궤선(狹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18척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33척(尺), 중량(重量) 20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천팔백(千八百) 입방척(立方尺)

다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 중(中) 병(丙)에 속(屬)한 것

라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마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바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6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예(汚穢)한 물품

제7조(條)제1항(項)제3호(號) 중(中) 「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」를 「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」로 개정(改正)함.